

**환경부
보도자료**

2005년 7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- ☐ '05. 7. 25배포
- ☐ 사진 없음
- ☐ 총 7 쪽

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	박연수과장 박광호사무관	전화 (메일)	02-2110-6716 bgh77@me.go.kr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

-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 입법예고 -
- 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,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특별법에 의한 주요 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
- ◇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조정 등 평가제도의 체계적 개선

☐ 환경부는 다른 법령의 제·개정에 따른 관련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새로이 추가하고, 지난 5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대상사업과 협의시기 등을 일부 조정 할 필요가 있어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」을 7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.

☐ 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20일간 각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,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경 개정·시행할 계획이며,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다른 법률의 제·개정에 따른 관련 개발사업과 기존 개발사업(시설)중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평가대상에 새로 추가
 - 「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,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

- ※ 위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아니었으나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
-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(일일 처리용량이 100kl 이상),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(면적 30만㎡ 이상) 등을 평가 대상 사업에 추가
-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고 협의시기 조정 등 평가제도 체계화
 -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가스사업의 설치공사(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kl 이상),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지정 등을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
 - 댐 건설사업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협의 시기를 기본계획 수립전에서 실시계획 승인전으로 변경하고,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조정
-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·광물 채취사업은 대상사업 범위에 기존 면적(10만㎡ 이상) 기준뿐만 아니라 채취량도 일정 규모(100만㎡)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
- 재협의대상 사업규모를 명확히 하고, 재협의 및 변경협의대상을 확대
 - 재협의대상 사업규모의 개념을 면적, 길이뿐만 아니라 협의한 사업의 폭·밀도·용적·용량 등의 전체 사업규모로 함
 - 재협의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, 변경협의 대상을 사업규모 100분의 15 이상 증가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로 강화

- 배출부과금과 중복 부과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제외

※ 대기·수질배출시설,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은 수질기준 초과분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고려

-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 요건에 이를 반영하고, 대체가능 기술자격의 관련전공에 도시 계획학, 조경학 등을 추가
-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평가대행 실적에 없는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
 -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2년 이상 평가대행 실적에 없는 경우에 2차 경고 후 등록취소에서 1차 경고 후 등록취소
 - 업무정지 처분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평가대행 업무를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6월 후 등록취소에서 곧바로 등록취소

□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검토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·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로 발전·정착시켜 나가는 한편, 중장기적으로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할 계획이다.

<참고자료>

붙임 :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」
주요내용

< 붙임 >

개정안 주요내용

I. 추진배경

- 타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을 추가하고,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서 평가대상사업과 평가협의 시기를 일부 조정
- 재협의 대상 사업규모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, 협의기준초과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중복 부과문제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II. 주요 개정내용

1. 시행령 개정내용

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, 협의시기 및 대상사업기준 조정

-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(5개 법률) 등의 제·개정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
 -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9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및 평택시 개발사업
 -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

- 「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
 - 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
 - 「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
-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일부 조정
- 골재채취단지 지정, 채석단지 지정 등 5개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조정
 - 댐 건설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기본계획 수립전에서 시행계획 수립전으로 조정하고, 기본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변경
-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, 연접된 시설 등 기존 사업중 평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평가대상사업으로 추가 및 대상사업기준 조정
-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중 처리용량이 1일 100kl 이상인 시설을 평가대상사업에 추가
 -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있는 도로건설 사업의 양 시설의 길이를 합산하여 평가대상사업 여부 결정
 - 기타 산지에서의 토석·광물 채취사업의 면적뿐만 아니라 채취량(100만 m^3)도 대상사업기준으로 추가 등
- 재협의대상 사업규모를 명확히 하고,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확대
- 재협의대상 사업규모의 개념을 면적, 길이뿐만 아니라 협의한 사업의 폭·밀도·용적·용량 등의 전체 사업규모로 함
 - 재협의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하는 경우도 추가

- 변경협약의 대상을 사업규모 100분의 15 이상 증가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로 강화 등
- 협의기준초과부담금과 배출부과금과의 중복부과 개선
 -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므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제외
-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 설정
 -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 -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당시의 사업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 등

2. 시행규칙 개정내용

- 평가대행자가 등록사항 변경신청 사항에 실험기기 및 장비를 추가 하고, 실험장비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받도록 함
- 자연환경기술 등의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이를 반영하고, 대체가능 기술자력의 관련전공에 도시계획학, 조경학 등을 추가
- 일정 기간동안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대행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
 -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2년 이상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 2차 경고 후 등록취소에서 1차 경고 후 등록취소
 - 업무정지 처분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평가대행 업무를 한 경우 1차 영업정지 6월 후 등록취소에서 곧바로 등록취소

3.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(환경부령) 개정내용

- 승인기관장이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협의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절차규정 신설
- 평가 대상사업 추가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추가
 -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등

III. 향후 추진일정

- 입법예고('05. 7월)
-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('05. 8~11월)
- 차관회의 · 국무회의 심의 및 개정 · 공포('05. 12월)